##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

### (계약기반 미래채권담보대출용)

(주)하	ŀЦ	ŀΩ	.햇	안

본인(이하 "판매기업"이라 합니다)은	_(이하 "구매기업'	"이라 합니다)과	체결한 물품 등	공급계익	<del>,</del> 서를 근
거로 하여 ㈜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「계약기반 미	래채권담보대출」	약정을 위한	년	월	_일자 여
신거래약정서(이하 "원 약정서"라 합니다)에 추가하여 다음 각	조항을 확약하며,	은행의 「은행여	신거래 기본약편	<u></u> (기업용)	)」이 적
유되은 중인한니다					

### 제1조 (목적)

이 약정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판매기업의 구매기업 앞 원활한 물품 등의 공급을 지원하는 은행의 「계약기반 미래채권담보대출(이하 "결제제도"라 합니다)」 이용과 관련한 추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 제2조 (약정체결의 기본사항)

판매기업은 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물품 등의 수량, 품질, 가격, 사후관리 등 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구매기업 과 판매기업 사이에 해결합니다.
- (2)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판매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
### 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1) "구매기업"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(2) "판매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(3) "물품 등"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공급하는 일체의 재화 및 용역을 말합니다.
- (4) "계약서"라 함은 물품 등의 공급을 위해 체결하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의 도급계약서, 물품공급계약서, 물품주문서, 구매 하인서 등을 말합니다.
- (5) "서울보중보험"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은행과 약정한 대출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보험중권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금전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험중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.
- (6) "상환처리비율"이라 함은 구매기업의 결제대금 중 판매기업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충당하여야 하는 원금의 비율을 말하며, 판매기업과 서울보중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(7) "대출실행예정일"이라 함은 판매기업과 서울보즁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출 취급 가능일자를 말하며, 판매기업 은 은행과 약정한 원 약정서에 따라 대출실행예정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(8) "대출만기예정일"이라 함은 판매기업과 서울보중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말합니다.

### 제4조 (입금계좌의 지정 및 상환처리비율)

- (1) 구매기업과 체결한 공급계약 및 서울보중보험과 정한 상환처리비율에 따라 대출금 상환에 우선충당하고 남은 공급대금의 입금과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기 위한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다음의 계좌로 약정합니다.
- ※ ㈜하나은행에 개설한 판매기업 명의의 입금계좌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

예금주명	예금주 사업자듕록번호	계작번호

(2) 서울보중보험과 정한 상환처리비율은 보험중권에 기재된 바와 같이 "

"%이며, 구매기업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금 중





# <u>상환처리비율에 해당하는 원금을 이 결제제도와 관련한 대출금에 우선충당합니다.</u> (단, 이 결제제도와 관련한 대출금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관련 이자를 추가 징구합니다)

### 제5조 (대출의 제한)

다음 각 항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됩니다.

- (1) 구매기업과 은행 간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
- (2) 판매기업에게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(3) 판매기업이 은행에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거나 불건전여신이 있는 경우 및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
- (4) 판매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(5) 판매기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른 연체정보, 대위변제 ·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거나 등록된 경우
- (6)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판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, 파산절차,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
- (7) 판매기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

### 제6조 (상환 의무)

<u>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본인</u> 은 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- (1)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 발생 시
- (2) 허위, 가공거래, 용통 등에 의해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대출이 취급된 경우
- (3) 서울보중보험의 보험 효력을 상실한 경우
- (4) 구매기업과 체결한 물품 등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

#### 제7조 (정보제공의 동의)

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 및 서울보증보험에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, 대출내역, 계좌정보 등을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### 제8조 (추가약정의 효력)

- (1)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.
- (2) 이 약정서, 원 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그 다음으로 원 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의 순서로 합니다.

년 월 일

채무자(본인): (인)

주 소:

연대보즁인: (인)

주 소:



